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11010- ~~122~~

시행일자 1997. 4. // ()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홍	
법 제 계 장	정	
기안	김철수 서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4. 15(화).

첨부 훈령안 각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령 시보게재

훈령제 ~~122~~ 호

1.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4. 15(화)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4호.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재난관리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4. 15(화).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4호(생략). 끝.

서울특별시장

안전대책위원회직운령규정 발령

발령대상 : 훈령 - 1건 (제정)

발령일 : 1997. 4. 15(화)

주관부서 : 재 난 관 리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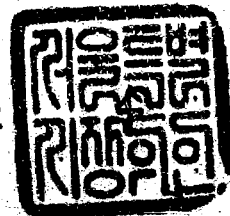
- 재난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시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및 의사, 실무 위원회, 위원의 협조, 조사·연구의 의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수당, 회의록 작성·관리, 회의결과외 통보, 운영세칙 등에 대하여 규정함.

서울특별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조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안

제 난 관 리 과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

우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6 - 7 / 전화 (02)3708-2320-1 / 전송 3708-2327
 처리부서 :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 조사관리과(본관3층) / 담당 : 박영환

문서번호 총무45010- 158

시행일자 1997. 4. 3.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법무담당관

선결	법무담당관 3	지	
접	일자 시간	시	
수	번호 2109	결	합계장 754
	처리과	재	
	담당자	공	
		람	

제목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 폐지 조치의뢰

1. '95. 6. 10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중기운영
 관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지(안) 1부. 끝.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장



라.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기타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나. 예산조치 : '98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정책기획관, 시정개발담당관과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재난관리계획 심의·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행정(1)부시장
2. 기획관리실장
3. 건설안전관리본부장
4. 소방본부장
5. 민방위재난관리국장
6. 기타 재난관리관련 실·국·본부장

7. 서울지방경찰청장
8. 수도방위사령관
9. 서울특별시교육감
10. 서울채신청장
11. 서울지방철도청장
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3. 기타 서울특별시 소재 재난관리 유관기관·단체의 장
14.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 및 제7조에 규정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재난관리과장)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동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단체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협조) 위원회의 위원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소관 분야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관리)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인, 안건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 실태를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731-6426-8 / FAX (02)731-6830

문서번호 재난 14001- 276
 시행일자 1997. 4. 7.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결	법무담당관	3	지		
접	일자	시간	결	합	제
		1997. 4. 7.	재	장	276
수	번호	1345	·		
처	리	파	공		
담	당	자	합		

제 목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안" 심사·처리 요청

1. 내무부 재송14000-43('97.3.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니 따르불인 "안"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르불임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안 6부. 끝.

재난관리과장 **이극환**